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목 차>

1. 구제명령의 이행기간
2.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3. 이행강제금의 금액산정 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교육부	작 성 자	이름	이소연
	담당부서 (과)	교원정책과		직급	주무관
	국장	홍기석		연락처	044-203-6970
	과장	윤소영		이메일	sy0129@mail.go.kr

2021. 07. 22.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홍기석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구제명령의 이행기간								
	2.규제조문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안 제26조								
	3.위임법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약칭 : 교원지위법)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교원의 실질적 권리구제 위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기속력 강화 요구가 그간 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교원 지위법 개정*(’21.3.23) * (주요 내용) 소청결정에 따라 이행하지 않는 법인 등에 관할청 의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등 부과 근거 마련(’21.9.24.시행)								
	7.규제내용	교원소청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분권자는 30일 이내에 결정 취지에 따라 조치함 (소청심사 거친 사안으로 교원의 권리회복과 법적 안 정성 위함이며, 교원지위법 개정(제10조 제3항 신설)에 따른 조치)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자 : 사학법인 등 ○ 이해관계자 : 교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사학법인 등</td><td>1,640여개</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사학법인 등	1,640여개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사학법인 등	1,640여개								
9.규제목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벌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구제결정이 있 음에도 실질적으로 구제받지 못한 교원 권리 구제 및 교원소청심사 위원회의 결정의 기속력 강화에 따라 교원의 권리 보호 가능									
규제의 적정성	10.영 향 평 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해당사항 없음								
기타	12.일 물 설 정 여부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6조(구제명령의 이행기간) 교육부장관 등이 법 제10조의3에 따라 처분권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때에는 처분권자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로부터 <u>30일 이내의 이행기간</u> 을 정하여야 한다. 단, 구제명령이 처분권자의 재임용심사를 내용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90일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한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교원의 실질적 권리구제 위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기속력 강화 요구가 그간 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교원 지위법 개정*(21.3.23)

* (주요 내용) 소청결정에 따라 이행하지 않는 법인 등에 관할청의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등 부과 근거 마련(21.9.24.시행)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해당없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해당없음		

3. 규제목표

- 해당없음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국공립 교원은 소청 결정 이행이 담보되나, 사립교원은 부당한 처분에 대해 권리 구제가 미흡하므로 구제 수단이 필요함.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의 경우 시도별 미이행수가 많지 않으며 시도교육청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거쳐 규정한 것임

※ 최근 3년간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 소청 미이행 현황 : 18년 없음, 19년 3건, 20년 14건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 타법사례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중앙노동위원회 사례 참조

: 노동위원회 재심결정을 받은 근로자는 15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III.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규제사항 없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규제사항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규제사항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20.8.13, 윤영덕 의원, '20.12.1, 이수진 의원)
 - ※ 법안심사소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 의결('21.2.17.)
- 「교원지위법」 개정('21.3.23.) 및 시행 예정('21.9.24.)

2. 향후 평가계획

- 관련 기관(시도교육청,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과 지속적인 협의 및 모니터링

3. 종합결론

- 상위 법령인 「교원지위법」 개정(‘21.3.23)에 따른 조치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벌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구제결정이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구제받지 못한 교원 권리 구제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의 기속력 강화에 따라 교원의 권리 보호에 기여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2.규제조문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안 제27조제2항								
	3.위임법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교원의 실질적 권리구제 위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기속력 강화 요구가 그간 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교원 지위법 개정*('21.3.23) * (주요 내용) 소청결정에 따라 이행하지 않는 법인 등에 관할청 의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등 부과 근거 마련('21.9.24.시행)								
	7.규제내용	교원지위법 제10조의4(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시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함 ※ 소청결정의 신속한 이행력 제고 위함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자 : 사학법인 등 ○ 이해관계자 : 교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사학법인 등</td><td>1640여개</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사학법인 등	1640여개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사학법인 등	1640여개								
9.규제목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벌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구제결정이 있 음에도 실질적으로 구제받지 못한 교원 권리 구제 및 교원소청심사 위원회의 결정의 기속력 강화에 따라 교원의 권리 보호 가능									
규제의 적정성	10.영 향 평 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해당사항 없음								
기타	12. 일 몰 설 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7조(이행강제금의 사전통지, 납부기한, 징수절차) ① 교육부장관 등은 법 제10조의4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미리 처분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교육부장관 등은 법 제10조의4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u>15일 이내의 납부기한</u>을 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등은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을 납부기한으로 할 수 있다. ④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교원의 실질적 권리구제 위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기속력 강화 요구가 그간 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교원 지위법 개정*(21.3.23)

* (주요 내용) 소청결정에 따라 이행하지 않는 법인 등에 관할청의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등 부과 근거 마련(21.9.24.시행)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해당없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해당없음		

3. 규제목표

해당없음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국공립 교원은 소청 결정 이행이 담보되나, 사립교원은 부당한 처분에 대해 권리 구제가 미흡하므로 구제 수단이 필요함.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의 경우 시도별 미이행수가 많지 않으며 시도교육청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거쳐 규정한 것임

※ 최근 3년간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 소청 미이행 현황 : 18년 없음, 19년 3건, 20년 14건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 타법사례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중앙노동위원회 사례 참조

: 의무이행확보 수단으로 위반행위 종류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 총 2년 동안 연 2회까지 이행강제금(1회 상한금액 2,000만원) 부과 가능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규제사항 없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20.8.13, 윤영덕 의원, '20.12.1, 이수진 의원)

※ 법안심사소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 의결('21.2.17.)

- 「교원지위법」 개정('21.3.23.) 및 시행 예정('21.9.24.)

2. 향후 평가계획

- 관련 기관(시도교육청,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과 지속적인 협의 및 모니터링

3. 종합결론

- 상위 법령인 「교원지위법」 개정(‘21.3.23)에 따른 조치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벌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구제결정이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구제받지 못한 교원 권리 구제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의 기속력 강화에 따라 교원의 권리 보호에 기여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이행강제금의 금액산정 기준								
	2.규제조문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안 제28조, [별표]								
	3.위임법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교원의 실질적 권리구제 위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기속력 강화 요구가 그간 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교원 지위법 개정*(’21.3.23) * (주요 내용) 소청결정에 따라 이행하지 않는 법인 등에 관할청 의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등 부과 근거 마련(’21.9.24.시행)								
	7.규제내용	교원지위법 제10조의4(이행강제금)에 따라 교원소청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행하지 않는 법인 등에 관할청이 위반행위 종류에 따라 총 2년 동안 연 2회까지 이행강제금(1회 상한금액 2,000만원) 부과 가 능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자 : 사학법인 등 ○ 이해관계자 : 교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사학법인 등</td><td>1,640여개</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사학법인 등	1,640여개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사학법인 등	1,640여개								
9.규제목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벌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구제결정이 있 음에도 실질적으로 구제받지 못한 교원 권리 구제 및 교원소청심사 위원회의 결정의 기속력 강화에 따라 교원의 권리 보호 가능									
규제의 적정성	10.영 향 평 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해당사항 없음								
기타	12.일 몰 설 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8조(이행강제금의 금액산정 기준) 법 제10조의4 제3항의 다른 이행강제금의 금액산정 기준은 <u>별표와 같다</u> . [별표] <table><tr><th rowspan="2">위반행위</th><th colspan="4">금액</th></tr><tr><th>1회</th><th>2회</th><th>3회</th><th>4회</th></tr><tr><td>재임용거부, 파면, 해임, 면직, 임용취소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td><td>1,000만원</td><td>1,300만원</td><td>1,600만원</td><td>2,000만원</td></tr><tr><td>정직, 강등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td><td>500만원</td><td>750만원</td><td>1,000만원</td><td>1,400만원</td></tr><tr><td>감봉, 견책,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td><td>300만원</td><td>500만원</td><td>700만원</td><td>900만원</td></tr><tr><td>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td><td>200만원</td><td>300만원</td><td>400만원</td><td>500만원</td></tr></table>	위반행위	금액				1회	2회	3회	4회	재임용거부, 파면, 해임, 면직, 임용취소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	1,000만원	1,300만원	1,600만원	2,000만원	정직, 강등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1,400만원	감봉, 견책,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900만원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위반행위	금액																													
	1회	2회	3회	4회																										
재임용거부, 파면, 해임, 면직, 임용취소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	1,000만원	1,300만원	1,600만원	2,000만원																										
정직, 강등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1,400만원																										
감봉, 견책,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900만원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교원의 실질적 권리구제 위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기속력 강화 요구가 그간 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교원 지위법 개정*('21.3.23)

* (주요 내용) 소청결정에 따라 이행하지 않는 법인 등에 관할청의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등 부과 근거 마련('21.9.24.시행)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해당없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해당없음		

3. 규제목표

해당없음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국공립 교원은 소청 결정 이행이 담보되나, 사립교원은 부당한 처분에 대해 권리 구제가 미흡하므로 구제 수단이 필요함,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의 경우 시도별 미이행수가 많지 않으며 시도교육청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거쳐 규정한 것임

※ 최근 3년간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 소청 미이행 현황 : 18년 없음, 19년 3건, 20년 14건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 타법사례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중앙노동위원회 사례 참조

: 의무이행확보 수단으로 위반행위 종류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 총 2년 동안 연 2회까지 이행강제금(1회 상한금액 2,000만원) 부과 가능

III.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규제사항 없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20.8.13, 윤영덕 의원, '20.12.1, 이수진 의원)

※ 법안심사소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 의결('21.2.17.)

- 「교원지위법」 개정('21.3.23.) 및 시행 예정('21.9.24.)

2. 향후 평가계획

- 관련 기관(시도교육청,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과 지속적인 협의 및 모니터링

3. 종합결론

- 상위 법령인 「교원지위법」 개정(‘21.3.23)에 따른 조치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벌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구제결정이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구제받지 못한 교원 권리 구제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의 기속력 강화에 따라 교원의 권리 보호에 기여